

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 운영 규정

제정 2025. 8. 11.

제2차 개정 2026. 8. 5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사업(이하 “앵커사업”이라 한다)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6.8.5.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앵커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 및 관련 조직, 앵커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관, 부서, 구성원에 적용한다.(개정 2026.8.5.)

제3조(사업기간) 앵커사업의 운영 기간은 교육부가 정하는 사업기간으로 하며, 본 규정은 해당기간 동안 적용한다.(개정 2026.8.5.)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4조(사업단의 구성) ① 대학은 앵커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장 직속의 사업단을 설치한다.(개정 2026.8.5.)

② 사업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사업단 산하에 사업운영실을 두고, 단위과제별 전담조직으로 본부, 센터, 연구소 등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6.3.30., 2026.8.5.)

④ 사업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교수, 연구원, 계약직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단의 기능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앵커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(개정 2026.8.5.)
2. 예산 편성 및 앵커사업비 집행 관리(개정 2026.8.5.)
3. 사업성과 관리 및 보고
4.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
5. 지자체,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
6. 그 밖에 앵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개정 2026.8.5.)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상지앵커위원회) ① 앵커사업 운영 및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 심의·의결 기구로서 상지앵커위원회(이하 “앵커위원회”)를 둔다. (개정 2026.3.30., 2026.8.5.)

② 앵커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.(개정 2026.8.5.)

③ 앵커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사업단장,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1명 내외로 구성하고, 그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26.8.5.)

④ 앵커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6.8.5.)

1. 사업 추진 전반의 전략 조정과 자원 배분
2. 자체평가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의 건의 및 추천에 관한 승인 (개정 2026.3.30.)
3. 각종 위원회 활동 방향 제시
4. 사업 추진 우수성과자 포상
5. 그 밖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[조 제목 개정 2026.3.30., 2026.8.5.]

제7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앵커사업 환류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26.8.5.)

②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사업단장, 교무연구처장,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 내외로 구성하고, 그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앵커사업비 집행 결과 평가(개정 2026.8.5.)
2. 성과지표 평가 및 변경, 조정
3. 사업계획 및 사업비(예산)의 변경 및 조정(다만, 경미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) (개정 2026.3.30.)

4. 사업 추진 우수성과자 추천

5.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

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제8조(성과관리위원회) ① 앵커사업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진행사항 모니터링, 사업의 지속 및 확산을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26.8.5.)

② 성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위원장과 IR센터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내부 구성원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하고, 그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성과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

1. 사업 성과지표 모니터링

2. 개선사항 도출 및 환류

3. 단위과제별 주관-참여대학 협의 사항 조정

4.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

⑤ 성과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그 밖의 위원회)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앵커사업 추진과 관련한 단위과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개정 2026.8.5.)

제4장 사업비 관리

제10조(사업비 구성) 앵커사업비(이하 “사업비” 라 한다)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구성된다.(개정 2026.8.5.)

제11조(사업비 관리) ① 사업비는 교육부가 정한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」 및 「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」에 따라 편성,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.(개정 2026.8.5.)

②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교비 회계로 집행할 수 있다. (개정 2026.3.30.)

③ 사업비의 집행 및 변경은 기획처장의 통제를 거쳐 사업단장이 통합 관리한다.

④ 앵커사업 종료시 사업단에서 취득한 연구장비, 교육기자재 등의 재산에 대한 귀속 여부는 사업 시행기관의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르되,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에 귀속된다.(개정 2026.8.5.)

제11조의2(물품구입·공사·용역 계약 및 물품검수 등에 관한 사무의 특례) 총장은 「사무분장규정」 제25조, 「물품구입규정」 제5조부터 제8조의2까지에도 불구하고 앵커사업단의 물품구입·공사·용역 계약 및 물품검수 등에 관한 사무를 앵커사업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(신설 2026.3.30.)(개정 2026.8.5.)

제5장 평가 및 기타

제12조(문서 및 기록관리) 사업단의 주요 회의록, 결과보고서, 회계자료, 지표성과 등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(규정 제·개정) ① 이 규정의 제·개정은 앵커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 (개정 2026.3.30., 2026.8.5.)

② 그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내규 및 지침은 「제규정 기본 규정」 제8조 2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·개정한다. (신설 2026.3.30.)

제14조(준용 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26.3.30.)

부칙 (기획예산팀-1695, 2025. 08. 11.)

이 규정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845, 2026. 03. 30.)

이 규정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038, 2026. 08. 05.)

이 규정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